

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

(미국 지방법원 뉴욕 동부 지원)

진행 중인 집단소송 통지

본 통지문은 법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. 이것은 변호인이 보내는 광고가 아닙니다.

다음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?

a) 타입 1 또는 타입 2 당뇨가 있는 아동

b) 뉴욕시 교육청 산하 공립학교에 현재 재학 중이거나 장차 입학할 예정인 학생.

본 케이스의 집단 소송이 법원에서 인정되었습니다. 본 통지문을 잘 읽어주십시오.

수신: 현재 뉴욕시 교육청 산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장차 재학할 예정으로,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당뇨와 관련된 케어를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학생 및 학부모

본 케이스 경위

- 당뇨병을 앓고 있는 세 명의 아동들이 그들의 부모를 통해 미국 당뇨 협회와 함께 (이하 “원고”) 뉴욕시 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에서 당뇨 어린이에 대한 케어의 개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. 본 소송명은 *M.F., et al. v. New York City Department of Education, et al.*, Civil No. 18-CV-6109 입니다.
- 원고측은 뉴욕시 교육청 산하 학교들이 장애인, 그 중에서도 특히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연방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합니다. 그 이유는 학교측이:
 - 당뇨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고 교육으로부터 혜택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, 당뇨 관련 케어 및 편의제공 사항을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할 섹션 504 회의 일정을 잡거나 이 회의들을 개최하지 아니 하였고;

- 학교 간호사, 보조교사, 보조원, 교사, 대리 교사 및 기타 교직원들이 당뇨를 앓고 있는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을 시키는 데 실패하였으며;
 - 당뇨를 앓고 있는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당뇨관련 케어를 받을 때, 이들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 불필요하게 격리시킴으로써, 이들이 소중한 수업시간을 놓치게 하였고;
 - 견학이나 방과 후 활동, 학교 아침 급식 등에서 당뇨를 배려한 케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, 당뇨를 앓고 있는 학생들을 학교 및 학교 관련 활동에서 배제시켰기 때문입니다.
- 고소 전문을 포함한 내용은 [본 소송 관련 추가 정보](#)에서 보십시오.
 - 뉴욕시 공립학교에서의 [당뇨 케어](#) 에 관해 알아 보십시오.
 - 원고들은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모든 집단 구성원들을 대변하도록 승인 받았습니다. 즉, 타입 1 및 타입 2 당뇨를 앓고 있는 모든 학생들로서 현재 뉴욕시 교육청 산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장차 재학할 예정이어서 학교에서 당뇨 관련 케어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대표하여 뉴욕시 교육청의 교내 당뇨관련 케어 및 편의제공 정책, 실행 및 절차 전반에 걸친 체계적 변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.
 - 본 소송에서 법원은 아직까지 피고측이 어떤 잘못을 했다고 판결한 바 없습니다. 원고측은 피고로부터 어떤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, 따라서 집단 구성원들도 본 소송의 결과로 인해 보상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. 원고는 피고가 규정 및 시행에 변화를 주기만을 원할 뿐입니다.
 - 원고는 본 소송 참여 여부에 관계 없이 당뇨를 앓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스템 전반에 걸친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.

귀하가 취해야 할 조치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. 본 통지는 귀하가 원할 경우, 본 소송의 추이를 지켜볼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.

본 소송 변호인단

1. 이 소송에서 제게 변호인이 있습니까?

법원에서는 비영리 로펌인 Disability Rights Advocates 에서 본 집단소송의 모든 집단 구성원들을 대리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. Disability Rights Advocates 는 장애인 권리와 관련하여 유사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. [Disability Rights](#) 에 관한 상세 정보 및 소속 변호사들의 경력을 참고하십시오.

2. 저도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까?

귀하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Disability Rights Advocates 이 여러분을 대리하여 소송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여러분이 직접 변호인을 두고 싶다면, 해당 변호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. 집단 소송 대리인 외 다른 이가 법정에서 여러분을 대변해 줄 것을 원한다면 직접 고용한 변호인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.

3. 변호인단에게는 어떻게 사례가 지급됩니까?

집단소송 변호인단은 그들이 본 케이스에서 행한 서비스에 대해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. 뿐만 아니라, 본 소송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도 스스로 해결하였습니다. 본 소송 집단이 집단소송 변호인단 덕에 혜택을 입을 경우, 변호인단은 피고측에 비용 및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귀하는 변호인단에 아무 것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.

귀하나 귀 자녀가 당뇨를 앓고 있는 학생으로서 학교에서의 당뇨 케어와 관련된 질문이 있다면, 다음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:

자녀 학교의 504 코디네이터 및/또는 보건 디렉터

및/또는

N.Y.C. 교육청 섹션 504 프로그램 매니저 Neil Somerfeld
718-310-2429
504Questions@schools.nyc.gov

보건 디렉터

보로/ 뉴욕시 오피스 학군	보건 디렉터	이메일	전화 번호	주소
Affinity	Norberto Perez	NPerez4@schools.nyc.gov	718-935-3891	131 Livingston St, Rm 607 Brooklyn, NY 11201
브루클린 북부 13, 14, 15, 16, 19, 23, 32	Laurell Watson	LWatson21@schools.nyc.gov	718-935-3663	131 Livingston St, Rm 506 Brooklyn, NY 11201
브루클린 남부 17, 18, 20, 21, 22	Juliana Felix-Barret	JFelixBarret@schools.nyc.gov	718-759-4921	415 89th St, Rm 509 Brooklyn, NY 11209
브롱스 7, 8, 9, 10, 11, 12	Marleni Moreira	MMoreira3@schools.nyc.gov	718-828-4694	1230 Zerega Ave Bronx, NY 10462
맨해튼 1, 2, 3, 4, 5, 6	Magdalene Gomes	MGomes6@schools.nyc.gov	212-356-7530	333 7th Ave, 8th Fl New York, NY 10001
퀸즈 북부 24, 25, 26, 30	Carin Jean Pierre-Destin	CPierre@schools.nyc.gov	718-391-8572	28-11 Queens Plaza North, 4th Fl Long Island City, NY 11101
퀸즈 남부 27, 28, 29	Rachelle Lewis	QSHealthDirector@schools.nyc.gov	347-647-1388	82-01 Rockaway Blvd, Rm 420 Ozone Park, NY 11416
스태튼 아일랜드 31	Stephanie Caloir	SCaloir@schools.nyc.gov	718-556-8383	715 Ocean Terrace, A-309 Staten Island, NY 10301

본 소송 관련 질문이 있으시면 집단소송 법률대리를 맡은 DISABILITY RIGHTS ADVOCATES 에게 문의하십시오:

[DISABILITY RIGHTS ADVOCATES](#)

diabeteslawsuit@dralegal.org
655 Third Avenue, 14th Floor
New York, NY 10017
전화: (212) 644-8644

학교에서의 당뇨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:

[미 당뇨 협회\(AMERICAN DIABETES ASSOCIATION\)](#)

1-800-DIABETES (342-2383)

askada@diabetes.org